

충청북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3년 2월 27일

○ 회부일자 : 1993년 2월 27일

3. 개 정 이 유

충청북도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가 청소년육성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동법이 폐지되고 청소년기본법이 1991. 12. 31 법률 제4477호로 제정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명칭 및 위원수를 조정하기 위함.

4. 주 요 골 자

- 조례명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지방청소년위원회로 변경.
- 지방청소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인원을 15인 이상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조정.
- 청소년관련기관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던 것을 청소년사업에 관한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개정.

5. 검토 의견

충청북도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육성법이 폐지되고 청소년기본법(1991.12.31 법률 제4477호)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위원회명칭은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에서 지방청소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수를 조정하며,
- 위원회 운영에 있어 청소년육성에 관한 계획을 심의조정하던 것을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여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과,
- 위원회 위원 위촉범위, 자문에 응할수 있는 범위 등을 대체로 상위 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조정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6. 개정조례안 및 참고자료 : 별첨